



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I(육계분야)

농림수산물부

축산물 도축·가공업체 지원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위생적인 도축·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
- 부분육·냉장육·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
-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 활성화
- 국내 축산관련업체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
 - LPC 등 위생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도축장의 점유율 상승 유도
 -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		
• LPC 도축 점유율(%)	26	20	22	24(P)	익년 1월	도축실적 보고자료 참고
• HACCP적용가공장(개소)	900	280	300	350(P)	당해연도 12월	전국 HACCP지정 가공장 수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	
합계	188,717	160,930	171,247	145,714	145,714	
용자	178,238	153,020	157,941	120,000	120,000	
자부담	10,479	7,910	13,306	25,714	25,714	
시설자금 (소관부서)	• 소계	34,929	26,360	44,347	85,714	85,714
	- 용자(70%)	24,450	18,450	31,041	60,000	60,000
	- 자부담(30%)	10,479	7,910	13,306	25,714	25,714

구분	2006년 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 이후	
(축산물위생팀)	• 도축장 시설현대화	10,000	5,715	5,715	15,714	15,714
	- 용자(70%)	7,000	4,000	4,000	11,000	11,000
	- 자부담(30%)	3,000	1,715	1,715	4,714	4,714
(축산물위생팀)	• 도축장 시설보완	3,500	3,500	3,082	18,126	18,126
	- 용자(70%)	2,450	2,450	2,157	12,688	12,688
	- 자부담(30%)	1,050	1,050	925	5,438	5,438
(축산물위생팀)	• 축산물가공업체 시설	10,714.5	8,572	8,084	28,900	28,900
	- 용자(70%)	7,500	6,000	5,658	20,230	20,230
	- 자부담(30%)	3,214.5	2,572	2,426	8,670	8,670
(축산경영팀)	• 계란가공장·집하장 및 등급시설	10,714.5	6,858	6,466	4,914	4,914
	- 용자(70%)	7,500	4,800	4,526	3,440	3,440
	- 자부담(30%)	3,214.5	2,058	1,940	1,474	1,474
(축산경영팀)	• 유제품 개발·생산시설	-	1,715	21,000	18,060	18,060
	- 용자(70%)	-	1,200	14,700	12,642	12,642
	- 자부담(30%)	-	515	6,300	5,418	5,418
운영자금 (소관부서)	• 소계	153,788	134,570	126,900	60,000	60,000
	- 용자(100%)	153,788	134,570	126,900	60,000	60,000
(축산물위생팀)	• 도축장 운영자금	63,707	63,750	60,116	33,850	33,850
	- 용자(100%)	63,707	63,750	60,116	33,850	33,850
(축산물위생팀)	• 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 자금	1,891	1,670	1,575	1,500	1,500
	- 용자(100%)	1,891	1,670	1,575	1,500	1,500
(축산물위생팀)	•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	50,000	40,000	37,720	21,500	21,500
	- 용자(100%)	50,000	40,000	37,720	21,500	21,500
(축산경영팀)	•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	3,150	2,560	2,405	2,150	2,150
	- 용자(100%)	3,150	2,560	2,405	2,150	2,150
(축산경영팀)	• 유업체 경영안정자금	35,040	26,600	25,084	1,000	1,000
	- 용자(100%)	35,040	26,600	25,084	1,000	1,000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가. 도축장 시설보완

1. 사업대상자

- 기존 도축장(소·돼지·닭·오리) 영업자 등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닭 도축장
 - 20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, 상위(30%)·중위(33%) 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



정책 II

- 오리 도축장
 - 20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(1,500천수/년) 이상인 도축장 영업자

3. 지원대상

-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
 - 도축장 영업자가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
- 도축 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(혈분제조시설 등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소·돼지·닭 도축장
 - HACCP 관련시설 개보수비용
 - 오·폐수 처리시설의 보관을 위한 개보수비용
 -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(도매시장 및 공판장)
 - 토종닭 도계라인 증설 및 개보수비용(닭 도축장)
- 오리 도축장
 - 도축·가공을 위한 시설과 오·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비용
- 공통사항 :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(용자) 70%, 자부담 30%
-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

나. 축산물가공업체 시설

1. 사업대상자

-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기존업체
 - 축산물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·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
- 신규업체
 -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
 - ※ 다만, 도축장이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대상에 해

당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

- 식육가공업(한우부산물가공장 등 포함) 영업장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

3. 지원대상

- 기존업체 : 건물 개보수비, 가공·저장시설 등
- 신규업체 :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기존업체
 -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공·저장시설 증축 및 개보수비용 등
 - ※ HACCP 적용 또는 계획(계약서 사본 첨부 등) 중인 업체에 우선 지원
- 신규업체
 -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건물, 가공·저장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
- 공통사항 :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(용자) 70%, 자부담 30%
-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영업장 운영현황,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

다. 도축장 운영자금

1. 사업대상자

- 소·돼지·닭 도축장 영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닭 도축장
 - 2008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, 상위(30%)·중위(33%) 등급에 해당하는 도축장 영업자

3. 지원대상

- 소·돼지·닭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축산물종합처리장(LPC)
 - 건설자금 부채상환,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
- 축산물도매시장(공판장) 및 일반도축장
 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
- 공통사항 : 당해년도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(융자) 100%, 연리 0~3%, 1년거치 일시상환
 - 도축장HACCP운용수준 상위등급업체는 0%, 중위등급업체는 3% 금리 지원
 - ※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(임차)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형태를 구성하여 생산·구매·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와 관계없이 LPC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3% 금리 지원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정부지원 LPC : 40억원 이내
- 일반도축장, 축산물도매시장(공판장) : 10억원 이내
- 공통사항 : 지원대상 업체의 도축능력의 합(소 또는 돼지 기준)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(소 또는 돼지 기준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 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
라. 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자금

1. 사업대상자

- 오리 도축장 영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08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(1,500천수/년) 이상인 오리 도축장 영업자

3. 지원대상

-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
 -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

원료구매자금 등

-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(융자) 100%,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1년거치 일시상환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업계획 검토 후 지원액 결정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
마.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

1. 사업대상자

-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HACCP 운용중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로서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영업자

3. 지원대상

-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비용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
 -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 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촉발기금(융자) 100%,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1년거치 일시상환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식육포장처리업
 - 전년도 지원액,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,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 - ※ 지원규모는 원료육 구매실적 50%,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%를 적용하여 결정



정책 II

- 식육가공업
 -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원액 결정
- 공통사항
 - 한국육가공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 - 2년 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%까지 지원(연차적으로 지원 축소)
 - ※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최대 100%까지 지원

III.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, 사업대상자 신청은 2009. 12월말까지 농림수산물부 보고
 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2009년도 사업지침에 준하여 사업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실시

2.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09년도 사업지침에 준하며, 달라지는 사항은 사전 예고 예정
- 담당과 : (02)500-2105 농림수산물부 축산물위생팀
(02)500-2082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

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
-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
 - 현재 특장차량을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%까지 확대할 목표임.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		
·가축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/연간 도축실적

※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,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 위생과 자료기준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이후
합계	-	-	-	3,900	22,800
·용자				1,950	11,400
·자부담				1,950	11,400
·가축수송특장차량				3,250	19,000
- 용자				1,625	9,500
- 자부담				1,625	9,500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지원 대상자 : 농·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, 농가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신청자격 :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및 농·축협, 농가

〈우선지원 요건〉

-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
 -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
- ② 축산물 공판장(도매시장) 등으로 공동(계통)출하 실적이 많은 농·축협
- ③ 농가

3. 지원대상

-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

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I (육계분야)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주요 대상 축종 :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, 계란
- 조건 및 금리 : 축발기금, 융자 50%(연리 3%, 2년거치 3년상환), 자부담 5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% 융자
 - ※ 기존(중고)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,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 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,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(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)

III.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사업계획은 2009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하며, 사업대상자 신청은 2009.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
- 담당과 : (02)500-2082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

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한·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

2. 근거법령

-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(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),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정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구분	성과지표	2009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목표치	2006	2007	2008		
양계	•일당중체량(육계)	39.8	38.8	39.3	39.5	매년 1월중	-일당 중체량(통계청 생산비 조사)
오리	•연간회전율	5.8	5.5	5.6	5.7	매년 1월중	-연간 출하횟수(오리협회 조사)

- 2017년까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,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09년이후
합계	-	-	-	124,424	1,788,575
-보조	-	-	-	37,327	536,573
-융자	-	-	-	62,212	894,287
-자부담	-	-	-	24,885	357,715
•한우	-	-	-	32,829	453,170
-보조	-	-	-	9,849	135,951
-융자	-	-	-	16,414	226,585
-자부담	-	-	-	6,566	90,634
•양돈	-	-	-	49,000	776,000
-보조	-	-	-	14,700	232,800
-융자	-	-	-	24,500	388,000
-자부담	-	-	-	9,800	155,200
•양계	-	-	-	24,192	335,808
-보조	-	-	-	7,258	100,742
-융자	-	-	-	12,096	167,904
-자부담	-	-	-	4,838	67,162
•오리	-	-	-	3,528	38,472
-보조	-	-	-	1,058	11,542
-융자	-	-	-	1,764	19,236
-자부담	-	-	-	706	7,694
•낙농	-	-	-	14,875	185,125
-보조	-	-	-	4,463	55,538
-융자	-	-	-	7,437	92,563
-자부담	-	-	-	2,975	37,025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참여농가(경영체 직영 포함) : 한(육)우 및 양돈에 한함.
 - 「브랜드경영체」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.
 - 농가조직체는 추후 별도 통보
-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(계열주체 포함) 또는 전업농 : 한(육)우, 양돈, 양계, 오리, 낙농 대상임.
 - 전업농 기준 : 한(육)우 50두 이상, 양돈 1,000두 이상, 양계(닭) 30,000수 이상, 오리 10,000수 이상, 낙농(젓소) 50두 이상
 -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수산식품부 고시)에 의해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.
 - 종돈장·중계장·중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



정책 II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06. 1. 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 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 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 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3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- ※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
 - ※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.
- 양계·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·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 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- 보조 30%, 융자 50%(연리 3%, 5년거치 10년상환), 자담 20%
 - ※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.
- 사업기간 : 1~2년(사업계획에 의함)

<2009년도 예산안 내용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량(개소)	사업비					자부담(20%)
		사업비합계	예산액			지방비(-)	
			계(100%)	보조(30%)	융자(50%)		
계	502	124,424	99,539	37,327	62,212	-	24,885
1. 한우	193	32,829	26,263	9,849	16,414	-	6,566
2. 양돈	140	49,000	39,200	14,700	24,500	-	9,800
3. 양계	72	24,192	19,354	7,258	12,096	-	4,838
4. 오리	12	3,528	2,822	1,058	1,764	-	706
5. 낙농	85	14,875	11,897	4,463	7,434	-	2,975

※ 주)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70% 적용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구분	사육시설 면적당(㎡) 지원한도액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사업비	
			지원한도액	총사업비
양계	산란계	476천원/㎡	20백만원	1,400백만원
	육계	304천원/㎡	20백만원	700백만원
오리	102천원/㎡	20백만원	700백만원	875백만원

※ 주) 지원한도액은 보조+융자의 합산액이며,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

III.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사업주관기관인 시·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

2.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-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,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.

■ 담당과 : (02)500-2082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

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(공공)

● 가축계열화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
 - 2006년 현재 양돈 16%, 양계 72%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2005~2008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양돈 36%, 양계 83%까지 확대

성과지표	2009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 산출시기	측정방식
		2006	2007	2008		
• 가축계열화율					2010. 2	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/총 도축두수×100
- 양돈	21	16	18	20		
- 양계	75	72	73	74		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6년까지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이후
합계	253,688	26,000	26,000	20,000	340,000
융자	253,688	26,000	26,000	20,000	340,000
• 양돈	113,748	15,896	13,000	10,000	170,000
• 양계	139,940	10,104	13,000	10,000	170,000

II.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가축계열화 사업자(계열화 참여가능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)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3-10)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
- 제한사항
 - 닭·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닭은 500천수, 오리는 200천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 -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- 농업법인(농농조합, 농업회사법인 등)은 농림수산물업설시규정 [별표 3]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(단, 시설비는 지원가능)
- 우선지원 요건
 -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와의 협의체를 구성, 협의체가 활성화된 업체
 -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 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 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 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 -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

3. 지원대상

- 돼지, 닭(육계, 산란계),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기반·사육시설, 가공시설, 유통시설·장비, 계열화사육비 등 <별표 1>에 명시된 지원대상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기금융자율·자부담율, 용자기간, 금리 등은 <별표 1>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참조
- 사업추진 기간내에 「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」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 함.
 - 닭·오리 :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중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해야 함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.
- 사업추진규모
 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(농가는 25호) 이상
 - 닭(산란계) : 연간 계란 생산·처리능력 150백만개(농가는 25호) 이상
 - 오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,000천수(농가는 15호) 이상

<별표 1>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범위	지원조건	비고
1. 계열주체사육시설	·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2. 계열농가생산시설	·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* 단,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한·미 FTA 국회비준시 이후에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	- 사업비의 70%이내 - 연 3%(변동이 있을 수 있음)	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
3. 가공시설(육가공 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하장 등)	·「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, 사업과 동일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4. 유통시설	·유통에 필요한 판매장·시설·장비 등		
5. 계열화사육비	·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·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4%(농·축협등 생산자단체 3%) *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	

*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■ 담당과 : (02)500-2082 농림수산물부 축산경영팀

- '축산종합제도(HACCP)지원사업' 부터는 다음호에 계속...